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우1630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 전화(031)243-5221,2 / 팩스(031)251-9770 / www.kgta.or.kr

문서번호 경기화협 제801호

시행일자 2020. 9. 29.

수신 각회원
(경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운수종사자의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교연20-113(2020.9.28.)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바, 2020년 보수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교육을 추진중이며 온라인보수교육 총 67기중 현재 53기까지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대상자가 다수 있으므로 각 회원님께서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은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4. 아울러,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 방법 중 PC 및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나 모바일(스마트기기)을 통한 보수교육 학습시 약 5G(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소모되오니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 이용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와이파이 환경 이용 및 PC(인터넷) 사용을 권장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0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결과 1부.
2. 2020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일정 1부.
3. 업종별 교육 방법 매뉴얼 1부.
4.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고달원



2020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결과

2020.9.26 기준

	과정별	계			보수교육			신규교육		
	기수별	대상	추진	%	대상	추진	%	대상	추진	%
	조합별	187	54	28.9%	167	53	31.7%	20	1	5.0%
총 계		141,732	81,630	57.6%	138,732	81,315	58.6%	3,000	315	10.5%
경기중계		141,732	81,612	57.6%	138,732	81,315	58.6%	3,000	297	9.9%
예민교육	소계	65,335	36,687	56.2%	62,335	36,390	58.4%	3,000	297	9.9%
	버스	22,798	19,712	86.5%	21,910	19,618	89.5%	888	94	10.6%
	일반택시	12,767	4,539	35.6%	12,005	4,460	37.2%	762	79	10.4%
	개인택시	13,831	1,123	8.1%	13,609	1,109	8.1%	222	14	6.3%
	전세버스	9,666	7,097	73.4%	9,192	7,058	76.8%	474	39	8.2%
	마을버스	4,616	3,315	71.8%	4,028	3,255	80.8%	588	60	10.2%
	고속버스	1,330	663	49.8%	1,330	663	49.8%	-	-	0.0%
	시군소속	327	238	72.8%	261	227	87.0%	66	11	16.7%
예민교육	소계	76,397	44,925	58.8%	76,397	44,925	58.8%			
	일반화물	32,980	17,333	52.6%	32,980	17,333	52.6%			
	용달화물	27,734	14,266	51.4%	27,734	14,266	51.4%			
	개별화물	14,254	12,799	89.8%	14,254	12,799	89.8%			
	시군소속	1,429	527	36.9%	1,429	527	36.9%			
타시도		-	18						18	

□ 2020년도 화물업종 온라인보수교육 일정

2020. 9. 29. 현재

교육일자	접수인원 / 정원	교육시간
10월 4일 ~ 10월 6일	894 / 2300	4시간
10월 8일 ~ 10월10일	391 / 2300	4시간
10월11일 ~ 10월13일	227 / 2300	4시간
10월15일 ~ 10월17일	94 / 2300	4시간
10월18일 ~ 10월20일	116 / 2300	4시간
10월22일 ~ 10월24일	117 / 2300	4시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온라인)
LMS 사용설명서
- 화물 교육생용 (PC) -

교육명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기간 : 3일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시간)
소요시간 : 4시간 ~ 5시간 (본인인증 등)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100%

※ 목차
1. APP설치하기
2. 회원가입하기
3. 교육예약하기
4. 학습시작하기
5. 본인인증하기
6. 학습하기
7. 수료확인

학습장애 상담 : 1644-5865
기타 교육 문의 : 031-251-6191



경기도교통연수원

1. 교육찾아가기

① WWW.NAVER.COM 접속하기



② 검색창에 “경기도교통연수원” 입력



③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④ “온라인교육장” 이동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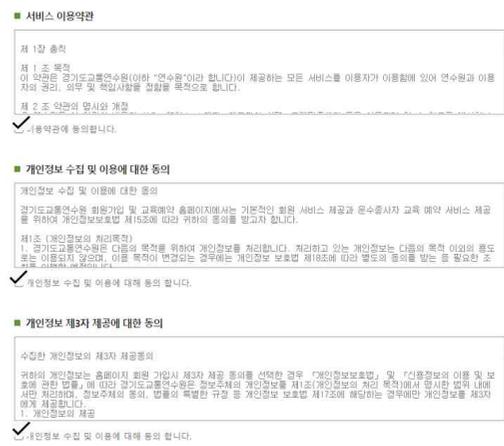


2. 회원 가입하기

① 온라인교육장 이동 후 회원가입 클릭



② 약관 내용 충분히 숙지 후 항목에
✓ 체크 “약관동의 후 정보입력” 클릭



③ 개인정보 확인



④ 회원정보 입력



⑤ 차량정보 입력



⑤-1 회사명 검색 방법



3. 교육예약하기

① 로그인하기



② 로그인 후 교육신청(예약)하기



③ 원하는 교육 일정으로 선택

과정명	입수원생/생원	기간	과정시간	학습하기
8월27일~8월29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32기	703/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8월30일~9월1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39기	486/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9월01일~9월05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1기	183/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9월05일~9월08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3기	188/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9월10일~9월12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5기	70/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9월13일~9월15일 /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7기	82/2300	3일	4시간	예약신청 >

④ 예약 신청 완료

신 청 기 간 2020년 06월 10일 (수) - 2020년 09월 01일 (화)
 교 육 기 간 2020-09-03 (목) - 2020-09-05 (토) 3일
 과 정 시 간 4시간
 수 료 기 준 진도율 100% 이상 / 총점 100점 이상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율	수료점수
평가비율 100%	0%	0%	0%	100점 이상
수료조건 100%이상	없음	없음	없음	
과제점수 -	-	-	-	

예약신청 > | 프린트

예약신청 클릭

4. 학습시작하기

① 학습시작하기 1



② 학습시작하기 2



③ 유의사항 내용 충분히 숙지, ✓ 표시 후 동의 클릭

수강 기간은 교육 당일부터 3일(72시간) 내 수강

- ✓ 기간 내 미수 시 재 예약 후 수강(예약 일정이 마감(교육 및 예약 종료)된 경우 불가)
- 타사도 차량(서울, 인천, 부산 등) 운수종사자는 신청(수강)이 불가 합니다.
- ✓ 허위(경기도 운수종사자로 허위 기재) 예약 후 수강 된 것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운행 중 수강 불가(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
- ✓ 모바일 학습 시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 3일(72시간) 내 수강을 완료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교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신청 가능 횟수 : 총 3회)
- ✓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소 | 동의 < 동의 클릭

④ 학습시작하기 3



5. 본인인증하기

① 본인인증 시작하기



② 핸드폰 인증 (가장 빠르고 간편)



③ 인증번호 입력하기



6. 학습하기

① 다음 장 넘어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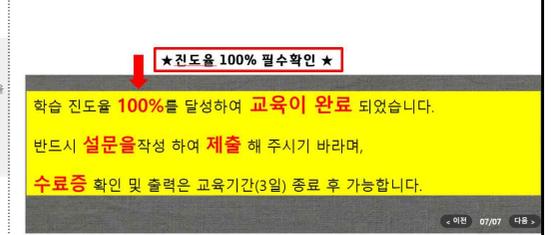
②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



③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 2



④ 모든 과목을 수강했을 시 보이는 화면



7. 수료확인

- ★「수료확정」 및 「수료증」 확인은 학습마감일 익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수료증」 확인은 【나의강의실→교육현황→복습가능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
LMS 사용설명서
- 화물 교육생용 (모바일) -

교육명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대상 :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기간 : 3일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시간)
소요시간 : 4시간 ~ 5시간 (본인인증 등)
수료기준 : 학습진도율 100%

※ 목차

1. APP설치하기
2. 회원가입하기
3. 교육예약하기
4. 학습시작하기
5. 본인인증하기
6. 학습하기
7. 수료확인

학습장애 상담 : 1644-5865
기타 교육 문의 : 031-251-6191



경기도교통연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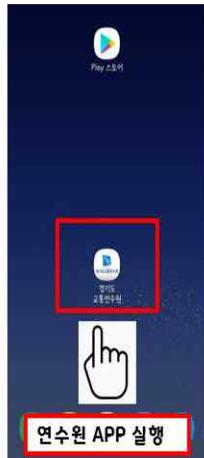
1. APP 설치하기

① PLAY 스토어 실행

①-1 실행 후 경기도교통연수원 검색 및 설치



② 연수원 어플 실행



2. 회원가입하기

① APP 실행 후 회원가입 시작하기

② 약관 내용 충분히 숙지 후 항목에
✓ 체크 “약관동의 후 정보입력” 클릭



③ 개인정보 확인



④ 회원정보 입력



⑤ 차량정보 입력



⑤ 차량정보 입력 2



3. 교육예약하기

① 로그인 하기



② 로그인 후 교육예약 하기



③ 원하는 교육일정으로 선택



④ 예약신청 완료



4. 학습시작하기

① 학습시작하기 1



② 학습시작하기 2



③ 유의사항 내용 충분히 숙지,

✓ 표시 후 동의 클릭

- 수강 기간은 교육 당일부터 3일(72시간) 내 수강
- ✓ 기간 내 미 이수 시 재 예약 후 수강(예약 일정 이 마감(교육 및 예약 종료)된 경우 불가)
- 타시도 차량(서울, 인천, 부산 등) 운수종사자는 신청(수강)이 불가 합니다.
- ✓ 허위(경기도 운수종사자로 허위 기재) 예약 후 수강 된 건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 ✓ 운행 중 수강 불가(문제 발생 시 본인 책임)
- ✓ 모바일 학습 시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 3일(72시간) 내 수강을 완료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교육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교육신청 가능 횟수 : 총 3회)
- ✓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④ 학습시작하기



5. 본인인증하기

① 핸드폰 인증(가장 빠르고 간편)



② 인증번호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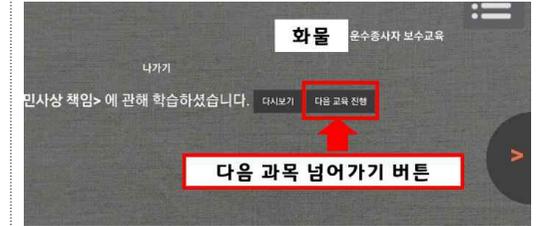


6. 학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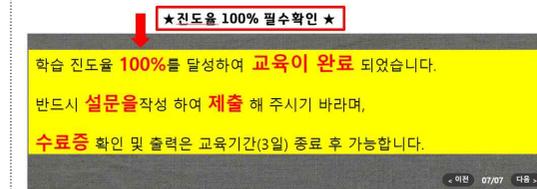
① 다음 장 넘어가는 방법



② 다음 과목 넘어가는 방법



③ 모든 과목을 수강했을 시 보이는 화면



7. 수료확인

★「수료확정」 및 「수료증」 확인은 학습마감일 익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수료증」 확인은 【나의강의실→교육현황→복습가능 교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10호서목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10.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 일부정지(10일)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3호머목, 제2호의 제17호차목, 제2호 비고 제1호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징 금 의 금 액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30만원

※ 비고

-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개정 2018. 11. 27.>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아. 운수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5호	50만원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50만원